

2023년도 국토교통부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공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선발 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직급)	인원	주요업무*	근무기관(근무장소)
기간제 근로자	1명	○ 평일 언론 모니터링(일 7회 이상) ○ 홍보 관련 행사지원 ○ 문서배부, 우편물 수령, 자료정리 등 서무(보조)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실 (세종시 소재)

2. 근무조건

가. 계약 기간 : '23.10.1~'24. 8.14.(약 10.5개월)

*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3개월 수습 근무

나. 근무형태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형태	보수
기간제 근로자	○ 주 5일, 40시간 - 근로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기본급(1호봉 1,890,690원), 정액급식비(140,000원) ○ 명절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 근무편성표에 따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상황에 따라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

다. 후생 복지 : 4대보험 가입(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라. 기타 사항 :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582호, `22.12.3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참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 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60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반영)

채용분야	인원	자격 요건
기간제 근로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 요건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제출서류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직무계획서, 3. 우대요건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수준, 조직내 협력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적극적 업무자세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결과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선정

나. 시험 일정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3.8.14.(월) ~ 8.25.(금)	'23.8.30.(수)	'23.9.6.(수)	'23.9.8.(금)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뉴스·소식→일자리정보→직원채용정보) 및 나라일터 게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예정

5. 응시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3.8.14.(월) ~ 8.25.(금)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서명하여 pdf로 만든 1개의 파일로 반드시 제출, 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hanaiji@korea.kr, 044-201-3068)

* e-mail 제목은 반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사자 서류제출(홍길동)” 기재, 접수한 메일로 접수 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므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할 것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3.8.30(수) 17:00)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일시 및 장소 : '23. 9. 6.(수) 10:00, 세종정부청사 6동 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3. 9. 8.(금)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6. 제출 서류

* 붙임 '서류제출 안내문' 필독 후 정확히 제출

7. 유의사항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자격증 등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 포기, 합격 최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4-201-3068)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기간제 근로자		* 핸드폰 번호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2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3호 서식	
4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자필 서명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5호 서식, 자필 서명	
이하부터는 해당자에 한함			
7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기간제 근로자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생년월일		우대·가산요건 대상자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기간제 근로자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 원서접수 기관의 장 ⑨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응시분야) : 정확히 기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전자우편 있을 경우에만 작성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⑥ 우대 · 가산요건 대상자 : 우대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반드시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기간제 근로자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무 관련 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대인관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기간제 근로자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와 연계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으로 작성합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